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4. 14 선고 2019가단1199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변론 종결2021. 3. 17.

판결 선고2021. 4. 14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3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
용산등기소 1980. 9. 22. 접수 제483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85.
9. 18. 접수 제655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박수현

별지